

2021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요강



건강한 웃음을 주는 사람들 —

동남보건대학교

DONGNAM HEALTH UNIVERSITY

1. 산업체위탁교육생 개요

- 가.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및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
- 나. 직업교육 증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강화

2. 시행근거

- 가.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
- 나.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(교육부예규 제26호)
- 다.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
3. 동남보건대학교의 특전

- 가. 무시험 입학으로 전문학사학위 취득
- 나. 장학금 혜택(산업체위탁생에게 수업료의 25% 지급)
- 다. 신분과 자격이 정규학생과 동일

※ 장학금 혜택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※ 장학금 문의 : 학생지원팀 031-249-6232(입학홈페이지 - 대학안내 - 장학제도)

4.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| 모집학과 | 계열 | 구분 | 모집인원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|
| 식품제약과 | 보건 | 야간 | 30 | 수업연한 : 3년 |
| 세무회계학과 | 사회실무 | 야간 | 25 | 수업연한 : 3년 |
| 뷰티케어과 | 보건 | 야간 | 40 | 수업연한 : 3년 |

- 산업체위탁교육은 전원 야간으로 개설함

- 1차 모집 결과 접수 및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반 개설을 취소함

5. 전형일정

가. 1차 모집

| 구분 | 일정 | 장소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서접수 | 2021.01.25.(월) ~ 01.29.(금) 14:00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(방문접수만 가능) |
| 관련서류제출 | 원서 접수시 제출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|
| 합격자발표 | 2021.02.05.(금) 14:00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(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) |
| 등록금납부 | 2021.02.08(월)~ 02.09(화) 16:00 | 가상계좌(우리은행 전국지점) |

-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등 모든 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숙지 바람

- 등록금 납부 세부일정은 합격자조회 후 등록금납부고지서 참조

-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개별 통보함

-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환불 및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, 지원자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함

- 1차 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반 개설을 취소함(전형료는 전액 반환함)

나. 2차 모집

| 구분 | 일정 | 장소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서접수 | 2021.02.15.(월) ~ 02.26.(금) 14:00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(방문우편 접수만 가능) |
| 관련서류제출 | 원서 접수시 제출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|
| 합격자발표 | 수시 발표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(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) |
| 등록금납부 | 수시 등록 | 가상계좌(우리은행 전국지점) |

- 2차 모집은 1차 모집 후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함
- 2차 모집은 제출서류 확인 결과 지원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선착순으로 **전원 합격 처리**함
-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납부 등 모든 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숙지 바람
- 등록금 납부 세부일정은 합격자조회 후 등록금납부고지서 참조

다. 1차, 2차 모집 유의사항

- **원서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**함(업무일 기준 / 토요일, 일요일은 접수 불가함)
- 합격자의 「합격통지서」 및 「등록금납부고지서」는 동남보건대학교 입학홈페이지(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)에서 납부기간에 개인별 출력
- **2021년 2월 26일(금)까지 최종 등록자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반 개설을 취소**함
(전형료 및 등록금은 전액 반환함)

6. 지원 자격

- ① **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**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계열 무관)
- ② 모집당시 산업체에 **재직 중인** 자로서, 산업체 **재직경력 9개월** 이상인 자
 - * 입학일 기준('21. 3. 1.)으로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**가입경력 합산**
 - 단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,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

가.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

나. 산업체 재직경력 근무기간 산정은 **4대 보험** 제출서류 발급일 까지 인정함

다. 신입생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합격자도 지원 가능(신입생 모집과는 별도의 모집임)

라. 모집요강 10. 재직여부 확인, 11. 제적기준 참조

7. 산업체의 범위

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
나.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

다.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
라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

마.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
바.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
사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
아.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
유의 사항

- ☞ 1차 산업 종사자인 농·어업인 등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,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,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·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)
- ☞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,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

8.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입학원서 1부 | 우리 대학 양식(입학홈페이지 다운 가능) |
| ②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1부 | |
| 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|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|
| ④ 4대 보험 제출서류 각 1부 |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,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, 산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 1부 |
| ⑤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 | |
| ⑥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2부 | 위탁반 개설 확정 이후 제출(별도 공지) |

[표1] 4대 보험 제출서류 발급 방법

| 제출서류 | 발행기관 | 인터넷홈페이지 | 발급방법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minwon.nhis.or.kr (사이버민원센터) | 개인 민원 /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|
| 국민연금가입증명서 | 국민연금공단 | minwon.nps.or.kr (전자민원서비스) | 개인서비스 / 가입증명서(국/영문) 클릭 |
| 고용보험가입내역서 | 한국고용정보원 | www.ei.go.kr | 개인서비스 / 조회 /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클릭 |
| 산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 | 근로복지공단 | www.kcomwel.or.kr | 해당 산업체에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|

- 가. 「인터넷발급증명서」 및 「어디서나 민원(동사무소발행 등)」 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 모두 제출 가능
- 나. 공공기관 민원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에는 반드시 **발급기관의 직인**이 있어야 함
- 다.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(2021.01.25(월)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함(단,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검정고시합격증명서)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유효함)
- 라.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만 가능함
 - ※ 서류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함(FAX 및 온라인 제출 불가)
- 마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바.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는 위탁반 개설 확정 이후 제출해야 함(별도 공지)

9. 선발기준

가.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의 장과 동남보건대학교 총장과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서류전형(무시험)으로 입학
을 허가함

나. 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1차 모집의 지원자 중에서 아래 순서에 의거 선발함

- ① 위탁교육 의뢰 인원이 많은 산업체
- ② 근무 직종과 학과가 관련되는 자
- ③ 당해 산업체에서 장기 근무 중인 자
- ④ 당해 산업체에서 직급이 상위적인 자
- ⑤ 연장자

다.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**미달시** 제출서류 확인 결과 지원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**전원 합격 처리함**

10. 재직여부 확인

가.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증명서로 확인

(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)

나.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

11. 제적기준

가. 퇴직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

- ①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②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
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
- ③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
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
12. 입학원서 및 전형료

가. 입학원서 :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 방문 접수(입학홈페이지 다운 가능)

나. 전 형 료 : 20,000원

다. **1차 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반 개설을 취소**하며, 전형료는 입학원서에 기재된
계좌로 반환함

13.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장소 | 동남보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(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)에서 신청 |
| 반환기간 | 2021.02.10(수) ~ 02.26(금) 15:00 |
| 반환방법 | 입학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온라인 입금됨(업무일 기준) |
| 반환근거 |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|

-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신청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반환함

- 등록금 및 전형료 환불계좌번호를 잘못 기재(입력)하였거나 계좌번호 변경에 따른 등록금 환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
- 당일 입금액(등록금 및 입학금)에 대하여 당일 반환은 불가하며, 입금 다음날 반환 신청 및 반환 가능
- 모집 마지막 날인 2021.02.26(금)의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은 15:00까지의 신청자에 한하여 2021.03.02.(화) (당일 반환 안 됨) 온라인 입금함(입학포기 및 반환신청은 2021.02.26(금) 15:00로 마감함)
- 입학일 이후(입학일 포함) 등록금 반환신청자는 입학포기가 아닌 자퇴처리 되며, 입학금 및 수업료는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반환함

※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(교육부령 제1호)

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
|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
|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
|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않음 |

-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
-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)은 위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
-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

14. 지원자 유의사항

- 가. 원서접수 완료(전형료 결제 시점)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,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, 천재지변, 질병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위탁교육심의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
- 나. 1차 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반 개설을 취소하며, 이후의 일정도 모두 취소됨
- 다. 2차 모집은 1차 모집 후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함
- 라. 2020년 2월 26일(금)까지 최종 등록자가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반 개설을 취소함(전형료 및 등록금은 전액 반환함)
- 마. 산업체근무자는 입학 후 졸업 시까지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에 1개 이상 가입이 되어있는 산업체에 근무를 계속해야 하고,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계속하여야 함(타 산업체로 이직은 가능하나 근무기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됨)
- 바. 위탁교육계약 체결 후 이직으로 산업체 변경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사. 산업체 위탁교육에서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- (2020. 7.) 「2021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」
- 아. 기한 내 제출서류 미 제출자 및 자격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됨
- 자. 부정합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하며,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
- 차. 제출서류에 대하여 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
- 카.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남보건대학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함
- 타. 동남보건대학교는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 및 선발에 있어 신체적, 정신적,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음. 다만 특수

교육 대상자(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이 있는 자, 제3자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자 등)는 수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대학 학생지원팀에 상담을 바라며, 학과 특성(현장실습, 실험실습 등)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

과.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
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

15. 기타 문의사항

| 학과명 | 전화번호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식품제약과 | 031-249-6439 |
| 뷰티케어과 | 031-249-6579 |
| 세무회계학과 | 031-249-6539 |

※ 입학상담(입학관리팀) 031-249-6262~5